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

제 출 일 : 2026. 10. 2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제안 이유

-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 개관 예정인 별내노인복지관의 운영사무 위탁에 대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약자의 여가활동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2조2(운영관리)

○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효율성 제고

2. 위탁사무 내용

○ 별내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 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노인복지관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운용 및 관리 일체
-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사무 운영 일체

3.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2-11

○ 규 모 : (대지면적) 2,435.8㎡, (연면적) 약7,170.9㎡

○ 층별현황

구 분		면적(㎡)	용도
지상	4층	924.03	대강당, 경로식당
	3층	940.51	동아리실, 사무실, 관장실
	2층	949.19	프로그램실
	1층	841.29	스마트건강라운지, 상담실, 물리치료실
지하	1층	1,763.45	문서고, 방재실, 지하주차장
	2층	1,752.44	기계실, 지하주차장

○위치도



4.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7. 4. ~ 2032. 3. (5년)

※ 시설 준공 및 개관 일정에 따라 위탁 개시일과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음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 주요내용

-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계획(공개경쟁) 수립
- 우리 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및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법인 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2027년 예산 기준)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소 요 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6명 = 600,000원
- 지급근거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별내노인복지관 개관준비

- 소 요 액 : 금155,446,000원(금일억오천오백사십사만육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134,996천원, 운영비 6,500천원, 자산취득비 13,950천원
- 지급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 필수인력(5명) 인건비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리, 노인복지 프로그램 구성, 이용자 관리 및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등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구 분	검 토 의 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 가능
경제적 효율성	○ 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여 지속적인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법인의 후원금 및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사회복지법인 등이 축적한 수년간의 노인복지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전문 프로그램을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다변화되는 노년층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준용,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설 연간 이용 실적 등 성과 평가 도구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 관리 성과를 주기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월하게 측정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으며, 매년 시의 정기 지도·점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승인, 세입·세출 결산 및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현재 다수의 경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 등 우수한 수탁 후보 단체(공급 시장)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어,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종 합 의 견	○ 노인복지관은 관내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여가 프로그램사업, 노인상담사업, 사회참여(노인자원봉사자)사업, 건강생활 및 돌봄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반영하고, 사업관리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2026. 12. : 수탁법인 선정계획 수립
- 2027. 01. :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
- 2027. 02.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2027. 03.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의회 보고

소관 과		노인복지과
입안자 (제출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김 윤 영
	팀장 직위・성명	노인지원팀장 이 주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연 주 (031-590-2674)

붙임1 관련 법령 및 조례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약자의 여가활동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관리)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 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